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 · 광고 안내서

안내서 제 · 개정 이력
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 · 광고 안내서

제 · 개정번호	승인일자	주요 내용
	2025.	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 · 광고 안내서 제정

본 안내서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, 표시 · 광고하는 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 아울러 본 안내서는 「화장품 표시 · 광고 자율심의기구」 광고자문위원회의 광고 자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.
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·광고 안내서

I. 목적

이 안내서는 “천연화장품” 및 “유기농화장품”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, 표시·광고하는 자에게는 “천연화장품” 및 “유기농화장품” 등의 표시·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II. 적용 범위

이 안내서는 “천연화장품” 및 “유기농화장품” 등을 표시·광고하려는 화장품이거나,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(유래) 또는 유기농(유래) 지수 함량만을 단순히 계산하여 표시·광고하려는 화장품에 적용된다.

III. 판단 기준

1 정의

“천연화장품”이란 동식물, 미네랄, 미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, ISO 16128-1*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의된 천연(유래) 원료를 사용하고, ISO 16128-2**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(유래)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%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을 말한다.

“유기농화장품”이란, 유기농 원료, 동식물, 미네랄, 미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, ISO 16128-1*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의된 천연(유래) 및 유기농(유래) 원료를 사용하고, ISO 16128-2**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(유래)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% 이상이어야 하며, 유기농(유래) 함량을 포함한 천연(유래)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%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을 말한다.

* ISO16128-1: Cosmetics — Guidelines on technical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natural and organic cosmetic ingredients (Part 1: Definitions for ingredients)

** ISO16128-2: Cosmetics — Guidelines on technical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natural and organic cosmetic ingredients (Part 2: Criteria for ingredients and products)

② 표시 · 광고

완제품이 제① 정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천연 또는 유기농 원료의 함량(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4항제5호)과 함께 “천연화장품” 또는 “유기농화장품” 으로 표시 · 광고할 수 있다.

완제품이 제① 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원료가 ‘천연(유래)’ 또는 ‘유기농(유래)’ 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‘천연(유래)’ 또는 ‘유기농(유래)’ 원료라고 표시 · 광고할 수 없다.

* 불가능 표현 예시 : “천연 (유래) 원료 000 사용“, “유기농 (유래) 원료 000 함유“(완제품이 제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)

다만,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천연(유래) 또는 유기농(유래) 지수를 명확히 계산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천연(유래) 또는 유기농(유래) 지수로 표시 · 광고가 가능하다.(식품의약품안전처 「화장품 표시 · 광고 관리 지침(민원인안내서)」)

* 가능 표현 예시 : “천연(유래)지수 00%(ISO 16128 계산적용)“
“유기농(유래)지수 00%(ISO 16128 계산적용)”

③ 실증 구비 자료

“천연화장품” 또는 “유기농화장품” 을 표시 ·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①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.